서울수상레포츠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가.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제3088호

다. 제안일자: 2025. 8. 11.

라. 회부일자: 2025. 8. 14.

2. 제 안 사 유

가. 서울수상레포츠센터는 수상레포츠 교육·체험, 레저선박 계류·보관, 편의시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한강 내 최초 친수기반 복합시설로서,

나.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운영 및 관리 운영

나. 시설개요

○ 시 설 명: 서울수상레포츠센터

○ 소 재 지: 서울시 마포구 한강난지로 162일대(난지한강공원)

○ 시설규모: 연면적 1226.9㎡(계류장 면적 제외)

구 분	규 모	주요기능	
복합지원센터 (수상구조물)	(1층) 611.4㎡	교육 및 편의시설	
	(2층) 615.5㎡ / 옥상	휴게공간 및 전망시설	
계 류 장	(수상) 2,600㎡	선박 및 수상레저기구 보관·계류	
	(육상) 5,000㎡		<시설 전경>

○ 추진경위: 조성공사 준공('24.2.29.), 센터 운영개시('25.5.1.)

- 운영관리 용역: '25. 4. 9. ~ '26. 2. 8.

다. 위탁기간: 2026. 2. 1. ~ 2029. 1. 31. (3년)

라. '26년 예산요구(안): 398백만원

마. 위탁사무

○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수상레포츠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수상 및 육상 계류시설 운영

○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 그 밖에 홍보 및 행사 등 수상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바.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개모집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사.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선박 및 수상레저기구 보관·계류 사무 수행을 위한 전문적 이해 및 기술이 필요하고 프로그램 운영 사무 수행을 위한 전문자격 및 역량이 필요한 사업으로,

○ 용역의 경우 매년 신규사업자 선정이 필요하며 선정기간(약 2개월) 동안 공백이 발생하는 등 장기 ·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이 어려움을 고려하여,

○ 운영사무 수행방식을 용역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할 필요가 있음.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제13조(위탁운영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제3호(민간위탁 사무내용)

나. 예산조치: ’26년 예산 편성필요

다. 합　　의: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적정)

5. 검 토 의 견

가. 개요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시설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적격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1]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서울수상레포츠센터 현황

○ 서울수상레포츠센터[2]는 2024년 2월 준공되어 당초 사용허가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낮은 접근성과 수익성으로 인해 사업자 선정이 5회 유찰되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함에 따라 임시방편으로 교육·편의시설과 계류장은 별도 용역비[3]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2층 휴게공간은 공실).

미래한강본부는 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익성 여부에 따라 휴게공간(2층)은 기존대로 사용허가 방식을 유지하고 교육·편의시설, 계류장 등의 유지·관리와 레포츠 프로그램 운영은 2026년 2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계획임.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조성 현황>

· 공사 기간 및 사업비: 2020.11.~2024.2., 184억원(공사 166억원, 감리 12억원, 설계 6억원)

구 분	규 모	주요기능
복합지원센터 (수상구조물)	(1층) 611.4㎡	교육 및 편의시설
	(2층) 615.5㎡	휴게공간(식・음료)
	옥상	전망 및 휴게공간
계 류 장	(수상) 30선석, 2,600㎡	선박계류장 및 훈련
	(육상) 186선석, 5,000㎡	선박계류장 및 수상레저기구 보관

<서울수상레포츠센터>

1)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공사기간 4년, 건설비 184억원
3) '25년 용역비 476백만원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본 동의안은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를 2026년 2월 1일부터 2029년 1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지난 6월 추진계획(신규)이 수립되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적정' 심의 후 동의안이 제출되는 등 절차대로 추진되고 있음.

○ 서울수상레포츠센터는 친수기반 복합시설로서 수상·육상계류시설[4] 운영, 수상레포츠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수상레저기구 조작 및 정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다루고 있는 만큼 안정적·지속적 서비스 제공,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관련 자격과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동 시설은 시 재정을 투입해 조성한 공공시설로서 당초 사용허가 방식으로 운영, 수익 창출을 계획했으나, 접근성과 수익성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설 준공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운영방식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부실한 계획 수립 및 정책의 일관성 결여 측면에서 비판받을 여지가 있을 것임.

○ 한편,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4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위탁사무명, 위탁사무 내용, 위탁시설 개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등을 규정[5]하고 있으나, 본 동의안에는 위치도와 소요예산 산출근거가 누락되어 있고 이러한 사례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임.

---

4) 한강 내 계류시설(총 354선석) 중 61% 차지

시 설 명	위 치	계류시설	비 고
서울수상레포츠센터	마포구 상암동	216선석	61.0%
서울마리나	영등포구 여의도동	90선석	25.4%
파라다이스	영등포구 여의도동	8선석	2.3%
로얄마리나	서초구 잠원동	25선석	7.1%
현대요트	서초구 반포동	15선석	4.2%

5) 제4조4(민간위탁 동의안) 시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3) 민간위탁금 검토

○ 본 민간위탁사업은 수탁기관이 이용료를 징수하여 운영 경비에 충당하는 시설형 위탁 방식[6]으로 운영되며, 민간위탁금은 지출액 5억 5천2백만원에서 수입액 1억 9천만원을 상계한 3억 9천8백만원을 편성할 계획임(붙임1. 민간위탁금 세부 산출내역(p.7)).

세부적으로 지출액 중 인건비[7]가 3억 7천8백만원으로 지출액의 68%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 시설보험료·복리후생비·소모품비·감가상각비 등 운영비로 1억 3천7백만원을 산출하고 있는 등 인건비 중심의 구조 속에서 운영 안정성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필수 비용이 적절히 포함된 것으로 판단됨.

수입액은 원가분석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계류장 및 프로그램 이용료로 약 1억 9천만원을 추정하고 있으며, 수입액 변동 가능성에 대응하여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는 경우는 별도의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증가하는 경우는 다음 연도 위탁비 산정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한 점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시설형 위탁 방식은 수탁자의 적극적인 수익 확보 노력에 따라 시설 활성화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수익 중심의 운영이나 비용 절감으로 인해 위탁 사무의 품질 저하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6)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운영관리 원가분석 용역('25.05. KIEI)에서 운영 방식 및 이용료 수입 귀속 주체를 분석하여 시설형 위탁 방식으로 선정(수입 감소시에도 별도의 재정지원 없음).

7) 총인원 10명 = 센터장(1명) + 팀장(2명) + 시설관리(2명) + 시설미화(1명) + 운영강사(4명)
운영강사 인건비는 6개월만 산정

붙임1	민간위탁금 세부 산출내역(398백만원)

항 목	내 역	금 액(원)	산출내역(원)
인건비	기본급	246,950,316	센 터 장 : 3,013,171원×1명×12월 = 36,158,052원 팀 장 : 2,794,530원×2명×12월 = 67,068,720원 시설관리 : 2,592,401원×2명×12월 = 62,217,624원 시설미화 : 1,791,586원×1명×12월 = 21,499,032원 운영강사 : 2,500,287원×4명× 6월 = 60,006,888원
	제수당	77,448,144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시간×시급×150%×10명 = 22,348,000원 연차수당 : 기준단가×7일 or 3일×10명 = 5,710,000원 주휴수당 : 기본급×20%×10명 = 49,390,000원
	퇴직충당금	20,457,096	퇴직충당금 : (기본급+제수당)/12×6명 = 20,457,096원 ※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4명)는 퇴직충당금 산정 제외
	보험료	33,354,350	국민연금 : (기본급+제수당)×4.5% = 14,597,930원 건강보험 : (기본급+제수당)×3.545% = 11,499,926원 고용보험 : (기본급+제수당)×1.15% = 3,730,584원 산재보험 : (기본급+제수당)×0.86% = 2,141,030원 장기요양 : (상주 기본급+제수당)×12.95% = 1,489,240원 임금채권 : (상주 기본급+제수당)×0.06% = 194,640원
소 계		**378,058,906**	
운영비	시설보험료	16,008,500	마리나업배상책임보험 : 12,960,000원 영업배상책임보험 : 2,773,000원 수상레저보험 : 243,000원 승강기배상책임보험 : 32,500원
	복리후생비	18,660,000	피복비 : 217,000원×6명+117,000원×4명 = 1,770,000원 식대 : 8,000원×22일×(12개월×6명+6개월×4명) = 16,896,000원
	도서인쇄비	1,283,000	브로슈어 : 186,455원×2세트 = 372,910원 전단 : 72,545원×2세트 = 145,090원 현수막 : 39,000원×15개 = 585,000원 자료인쇄 : 50원×3,600매 = 180,000원
	광고선전비	18,228,000	브랜디드 광고 : 15,000,000원×1회 = 15,000,000원 라디오 광고 : 161,400원×20회 = 3,228,000원
	수리선전비	7,207,418	시설물 수리수선 : 600,623원×12월 = 7,207,481원
	지급수수료	10,838,650	무인보안시스템 : 400,000원×12월 = 4,800,000원 법정의무 및 친절교육 : 1,800,000원×1회 = 1,800,000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 123,700원×12월 = 1,484,400원 승강기유지관리 대행수수료 : 140,000원×12월 = 1,680,000원 전기설비 정기검사 : 211,300원×1회/2년 = 105,650원 승강기 정기검사 : 133,600원×1회 = 133,600원 전화 : 15,000원×12월×2회선 = 360,000원 인터넷 : 39,500원×12월 = 474,000원

항 목	내 역	금 액(원)	산출내역(원)
	소모품비	8,984,048	락스 : 6,800원×12개 = 81,600원 비누 : 1,500원×120개 = 180,000원 화장지 : 32,500원×12팩 = 390,000원 마포대 : 9,800원×2개 = 19,600원 변기솔 : 4,810원×6개 = 28,860원 종량제봉투 : 1,880원×183개 = 343,100원 빗자루 : 7,700원×2개 = 15,400원 쓰레받이 : 4,400원×2개 = 8,800원 고무장갑 : 3,300원×12개 = 39,600원 손소독제 : 7,500원×12개 = 90,000원 유류대 : 1,610.5원×3000L = 4,831,500원 코팅장갑 : 6,000원×12개 = 72,000원 입장객 손목띠 : 63.6원×20,000개 = 1,272,000원 유흡착재 : 113,636원×3개 = 340,908원 abc분말소화기(3.3kg) : 26,000원×3개 = 78,000원 abc분말소화기(10kg) : 167,000원×1개 = 167,000원 유처리제 : 28,636원×5개 = 143,180원 기타소모품비 : 1,000,000원×1식 = 1,000,000원
	지급임차료	1,297,092	복합기 : 60,000원×12월×1대 = 720,000원 정수기 : 48091원×12월×1대 = 577,092원
	여비교통비	300,000	관내여비 : 25,000원×12회 = 300,000원
	감가상각비	50,670,961	카약(1인승) : 518,181원×10대÷10년 = 518,181원 카약(2인승) : 800,000원×10대÷10년 = 800,000원 킬보트 : 42,727,272원×6대÷10년 = 25,636,363원 딩기요트 : 7,363,636원×8대÷6년 = 9,818,181원 폰툰 : 64,000원×800개÷6년 = 8,533,333원 구명조끼 : 40,000원×50개÷6년 = 333,333원 고무보트 : 10,036,364원×3대÷7년 = 4,301,298원 구명환 : 48,000원×10개÷6년 = 80,000원 사무용PC : 1,158,182원×2대÷5년 = 463,272원 책상 : 297,000원×2개÷9년 = 66,000원 의자 : 217,800원×5개÷9년 = 121,000원
	안전보건관리비	3,569,255	안전보건관리 : 344,855,556원×1.035% = 3,569,255원
소 계		**137,051,987**	
일반관리비		10,311,217	- 소요예산(인건비+운영비)의 2%
이윤		26,293,605	- {소요예산(인건비+운영비) + 일반관리비}의 5%
총지출		**552,165,715**	소요예산+일반관리비+이윤
총수입		**189,921,610**	수상레포츠 프로그램 이용료 수입 : 57,723,904원 계류장 이용료 수입 : 132,197,706원
총원가		362,244,105	총지출-총수입
부가가치세		36,224,410	- 총원가의 10%
합계(백원 이하 절사)		**398,468,000**	

※ 일반관리비율 2.0%, 이윤율 5.0% 적용